

한국도로공사 2020년 하반기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일반(5급)공채-일반전형, 보훈전형]

1. 선발분야 및 인원

구 분	계	행 정 직		기 술 직							
		경영	법정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전산	전자
				일반	교통						
일반전형	73	13	3	26	4	2	5	4	4	6	6
보훈전형	7	4	-	3	-	-	-	-	-	-	-

※ 분야별 수행 직무는 NCS 직무기술서 참조

2. 채용직급 : 인턴사원(채용형)

※ 인턴 신분으로 교육 및 현장실습기간(4개월 내외, 단 인력수급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중 평가를 거쳐 정규직(5급) 임용

3. 지원자격

구 분	일반전형	보훈전형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성별, 연령(공사 정년에 도달하는 자 제외) 등 제한 없음 ○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병역특례 근무중인 자 제외) ※ 인턴채용일('20.12.21 예정)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공사 인사규정 제8조(붙임 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인턴채용일(`20.12.21 예정)로부터 발령지(전국 전 사업장) 근무 가능자 																			
어 학 (택 1)	○ 어학성적(해당점수 이상 보유)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TOEIC</th> <th>TEPS</th> <th>TOEFL (IBT)</th> <th>OPIc</th> <th>TOEIC Speaking</th> </tr> </thead> <tbody> <tr> <td>일반지원자</td> <td>700점</td> <td>340점</td> <td>71점</td> <td>IM2</td> <td>120점</td> </tr> <tr> <td>사회형평 대상자*</td> <td>500점</td> <td>242점</td> <td>51점</td> <td>IL</td> <td>90점</td> </tr> </tbody> </table>		구 분	TOEIC	TEPS	TOEFL (IBT)	OPIc	TOEIC Speaking	일반지원자	700점	340점	71점	IM2	120점	사회형평 대상자*	500점	242점	51점	IL	90점
	구 분	TOEIC	TEPS	TOEFL (IBT)	OPIc	TOEIC Speaking														
	일반지원자	700점	340점	71점	IM2	120점														
사회형평 대상자*	500점	242점	51점	IL	90점															
* 사회형평 대상자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청각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 듣기부분을 제외하고 TOEIC 250점, TEPS 145점('18. 5.12 以後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기준 : `18. 11. 25 이후 응시하고 `20. 10. 22 까지 발표한 시험성적 ※ 위 기간 이외의 어학성적의 경우 「코로나19상황 下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정부지침에 따라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한 자에 한해 인정 ○ 조회확인이 불가능한 성적, 국외응시 및 특별시험 성적은 불인정 ○ 어학성적은 지원자격 확인용으로만 사용함 																				
자격증 (기술직)	○ 선발분야 기사이상 자격증 보유자(붙임 2)																			
기 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붙임 3)																			
비 고	○ 일반(5급)·고졸(8급) 공채 및 일반전형·보훈전형 중복 지원 불가																			

4. 근무장소 : 한국도로공사 전 사업장(본사 및 전국 소재 기관)

5. 전형별 주요내용

전형단계	내 용	일정(예정)
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홈페이지 상 온라인 접수(www.ex.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학, 역량기술서, 기술직 필수자격증(붙임 2), 부가가점(붙임 3),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입 ○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실시하며, 진행절차 중 허위·오기재 등임이 판명될 경우 바로 탈락 처리 ○ 입사지원서 상 입력된 각종 지원자격 사항은 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추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학 및 필수자격증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생년월일 및 성별정보 확인 후 진위 확인 예정임 ※ 어학 및 자격증 조회를 위한 본인확인기간(10.29~11.2 17:00)내 본인확인 미실시 및 미기재·오기재 등의 사유로 관계기관 조회불가시 '필기시험 응시여부와 무관하게 필기전형 미응시자로 처리하여 채점은 미실시하고 탈락' 등 불이익처리 되므로 자격증번호 등 신중하게 기입 ○ NCS 기반 역량기술서 작성불량자(단순 기호입력 등 불성실 입력, 타기관 지원서 입력, 표절, 블라인드 위반 등)는 서류전형 탈락 처리 	<p>10.8(목) 14:00~</p> <p>10.22(목) 15:00</p> <p>(기간 내 24시간 입력 가능)</p> <p>* 합격자발표 : 10.29(목)예정</p>
필기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장소 : 서울,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시험 장소는 입사지원시 선택하며, 응시희망지역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경우에는 지역별 필기수용인원 한도내에서 원서접수 순에 따라 배정(입사지원서 先제출자에게 우선권 부여) ※ 세부 시험장소는 필기전형 공고(11.4) 시 확정(홈페이지상 개별 확인) ○ 평가항목(붙임 4) : 직업기초능력평가(30%) / 직무수행능력평가(70%) ○ 선발방법 :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 부가가점(붙임 3) 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각각의 점수 40% 미만 득점(과락)시 불합격 처리 ※ 필기전형 불합격자에 한해 합격 커트라인 및 본인 점수 공개 예정 (어학 및 필수자격증 조회불가자는 미응시자로 간주하여 비공개) ○ 선발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명 이상인 분야 :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 5명 이하인 분야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p>11.7(토)</p> <p>* 합격자발표 : 11월중 예정</p>
면접전형 및 인성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전형(직무 및 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개인역량 종합평가(발표 등) ※ 입사지원시 제출한 역량기술서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 인성검사(조직적합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전형 당일 실시 및 부적격자 배제(탈락) 	추후통보
최종합격자 발 표	○ 필기시험 점수, 면접전형 점수, 법정가점 합계 고득점자 순	추후통보

6. 채용목표제

구분	일반전형 / 보훈전형
이전지역인재	<p>○ 대상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기준 대구·경북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제외 ※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는 자</p> <p>○ 목표비율 각 전형별 선발 예정인원의 24% (소수점에서 반올림)</p> <p>○ 방 법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각 전형(필기·면접) 선발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의 '24%'에 미달하는 경우(단,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선발분야에 한함) 각 전형 선발분야별 합격 최저점수 '-3점'의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단, 과락자는 제외)</p>
양성평등	<p>○ 목표비율 각 전형별 선발 예정인원의 20% (소수점에서 반올림)</p> <p>○ 방 법 특정 성별 합격인원 비율이 각 전형(필기·면접) 선발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단,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선발분야에 한함) 각 전형 선발분야별 합격 최저점수 '-3점'의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단, 과락자는 제외)</p>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p>○ 목표비율 각 전형별 선발 예정인원의 2% (선발인원이 10명 초과 24명 이하일 경우 소수점에서 올림, 25명 이상일 경우 소수점에서 반올림)</p> <p>○ 방 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합격인원 비율이 각 전형(필기·면접) 선발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의 '2%'에 미달하는 경우(단,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선발분야에 한함) 각 전형 선발분야별 합격 최저점수 '-3점'의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단, 과락자는 제외)</p>

7. 합격자 근무조건

- 보수수준 : 250만원 수준/월 (단, 5급 임용 시에는 해당 보수기준 적용)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복지후생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등

8.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를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입력착오(미기재, 오기재, 공유로 인한 표절 등)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필수 및 우대관련 요건사항에 대한 진위확인 시 필요한 별도 서류는 공고일 3개월전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만 인정
- 지원 마감시간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 할 수 있으니 접수 기간 내 미리 지원서 작성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시간 연장 없음)
-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 등이 판명될 경우 채용 취소는 물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입사지원서 작성시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리 공사는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사지원서 및 역량기술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의 기재를 금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하여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노출시 부적격(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결원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결원 발생시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됩니다.
-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공사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취소, 채용시 자격 제한, 관련기관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형별 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과락, 인성검사 불합격 등)하는 경우 합격배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하지 않은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및 방법 등은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에 따라 안정적인 채용절차 운영을 위해 면접단계를 통합(2단계→1단계) 운영하며 필요시에는 온라인 면접 등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전형별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전형단계별 합격자 여부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최종합격자 발표 안내시 공지(예정)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 불가

- 선발분야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9.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코로나-19에 대비하여 필기 및 면접전형 시 감염병 예방절차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시험장 입구에서 ① 발열검사, ② 손소독 시행, ③ 마스크 착용 확인 후 입실합니다.
- 다음의 대상자는 시험장 출입 및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 ①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
 - ②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 ③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④ 마스크 미 착용자
- ※ 발열(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시 37.5℃ 이상인 경우)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문 의 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

- 붙 임 : 1. 채용결격사유(공사 인사규정 제8조) 1부
2. 필수 자격증 기준 1부
3. 부가가점 기준 1부
4. 필기시험 출제 범위 1부
5.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1부. 끝.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9.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필수 자격증 기준

□ 기술직 - 해당분야 기사, 기술사 자격증

구분	대상 자격(1개 이상)
토목(일반)	교통기사, 토목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건설안전기사, 도시계획기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콘크리트기사, 토양환경기사
토목(교통)	교통기사, 토목기사, 도시계획기사
건축	건축기사
전기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기계/설비	일반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 건설기계기사(건설기계설비기사), 건축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수질환경기사, 기계설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대기환경기사
전산/전자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전파통신·전파전자기사 포함),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방송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붙임 3

부가가점 기준

□ 법정 가점

구 분		부가점수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각 전형별 만점의 5% / 10%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선택 가점

구 분		부가점수	비 고
재직직원	2년 이상 한국도로공사에 재직 중인 직원 (시간선택제 직원의 경우 근로시간을 전일제로 환산하여 적용)	필기시험 만점의 5%	○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가장 유리한 선택가점 하나만 적용함
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한국도로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수료자 (계약 만료후 2년 이내, 채용시 소멸)	필기시험 만점의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필기시험 만점의 5%	

□ 자격증 가점

구 분		부가점수
공 통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필기시험 만점의 3%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국사능력검정 1·2급	" 2%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구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행 정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 10%
기 술	해당 직종 기술사(서류전형 기준 자격증)	" 10%
	해당 직종 기사(서류전형 기준 자격증)	" 3%

- ※ 가점계산 방법 : 법정 가점 + 선택 가점(재직직원, 체험형인턴, 장애인 중 택 1) + 자격증 가점
- ※ 법정가점과 선택가점은 합산하여 10%(10점) 초과불가
- ※ 자격증 가점은 가장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적용

붙임 4

필기시험 출제 범위

□ 직업기초능력평가

구 분	출 제 과 목
행정직군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자원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기술직군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기술능력

□ 직무수행능력평가

구 분	출 제 과 목	
행정	행정(경영)	경영학원론, 회계학(중급 재무회계), 경제학원론
	행정(법정)	행정학원론, 정책학, 헌법, 행정법
토목	토목(일반)	응용역학, 철근및P.S콘크리트공학, 토질및기초공학, 토목시공
	토목(교통)	교통공학, 도로공학, 교통계획, 교통안전
건축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전기	전력공학, 전기기기, 전기법규, 전기응용	
기계	열역학, 유체역학, 재료역학, 기계설계	
설비	열역학, 유체역학, 공기조화 및 냉동기계	
전산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공학, 운영체계, 정보보안, 컴퓨터네트워크	
전자	회로이론, 전자회로, 무선통신, 광통신, 데이터통신	

※ 공고문에 표기된 시험범위 외의 문의는 받지 않음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가. 이전 지역인재의 개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 (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 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나. 이전지역 학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②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③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예시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이전지역학교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 지방학교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

- ④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다. 이전 지역인재

이전지역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음

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 ㉠ 『고등교육법』 상의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예 시 >

<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 대학 졸업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예정) : 해당

<대학졸업 후 다른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이전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대학중퇴 후 다른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해당
-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비해당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 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해당
-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해당